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에 국가항만 재난대응을 위하여 울산항만 소방정대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5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3명, 소방장 3명, 전문경력관 가군 6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며, 한시조직으로 설치된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이 존속기간 만료로 폐지됨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7. ~ 12.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국립소방병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21조의2제3항 중 “정대장 1명”을 “각각 정대장 1명”으로, “정대장은”을 “각 정대장은”으로 한다.

제7장(제25조)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284”를 “285”로, 일반직 계 “41”을 “42”로, 3급 또는 4급 이하 “35”를 “36”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76”을 “601”로, 소방공무원 계 “468”을 “478”로, 소방준감 이하 “466”을 “476”으로, 일반직 계 “108”을 “123”으로, 전문경력관 “99”를 “114”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119대응국) ① (생 략)	제11조(119대응국) ① (현행과 같 음)
② 119대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 29. (생 략)	1. ~ 29.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0. 국립소방병원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u>
제21조의2(소방정대) ① · ② (생 략)	제21조의2(소방정대) ① · ② (현 행과 같음)
③ 소방정대에 <u>정대장 1명</u> 을 두 며, <u>정대장</u> 은 소방령으로 보한 다.	③ ----- <u>각각 정대장 1명-</u> <u>--- 각 정대장</u> ----- --.
<u>제7장 한시조직</u>	<u><삭 제></u>
제25조(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장)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 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 항제1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 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획조정관 밑에 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장을 둔다.	<u><삭 제></u>
② <u>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u> 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③ <u>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u>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	

정관을 보좌한다.

1. 국립소방병원과 관련한 주요
사업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국립소방병원 건립을 위한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국립소방병원의 설계·공사
발주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국립소방병원의 건립·운영
과 관련한 법령의 제·개정
및 대내·외 업무 협조에 관
한 사항

5. 그 밖에 국립소방병원 건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④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
표 5와 같다.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84</u>	<u>285</u>	+1
•	•	•	
•	•	•	
일반직 계	<u>41</u>	<u>42</u>	+1
3급 또는 4급 이하	<u>35</u>	<u>36</u>	+1
•	•	•	
•	•	•	

[별표 3]

소방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76</u>	<u>601</u>	+25
소방공무원 계	<u>468</u>	<u>478</u>	+10
·	·	·	
소방준감 이하	<u>466</u>	<u>476</u>	+10
일반직 계	<u>108</u>	<u>123</u>	+15
·	·	·	
전문경력관	<u>99</u>	<u>114</u>	+15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8